



제429회 국회(임시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수벌금제 도입〉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75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5
가. 일수벌금제도 개관 및 그간의 경과	5
나. 일수벌금제도 도입 논의 및 외국 입법례	6
다. 검토의견	9
참고자료: 일수벌금제에 대한 외국 입법례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4. 16.
3. 회 부 일: 2025. 4. 17.

II. 제안이유

벌금형은 자유형의 부정적 영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재산 박탈의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적합한 형벌이라는 장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력에 따라 형벌로서의 효과를 달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득 수준·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자는 논의가 1986년 법무부의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지속되고 있음. 일수벌금제란 현행 총액벌금제가 벌금의 총액만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벌금을 일수(日數)와 일수정액으로 구분하여 정한 후에 이를 곱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먼저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수(1일 이상 3년 이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일당 벌금액(1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을 확정해 양자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참고로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1931년), 덴

마크(1939년), 독일(1975년), 오스트리아(1975년), 스위스(2002년)에서 도입하였고 프랑스는 1983년 총액벌금제와 일수벌금제를 함께 채택하였음.

또 기존 노역장유치 기간은 위 내용의 개정에 따라 벌금형의 일수와 연동하도록 함.

Ⅲ. 주요내용

- 가.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함.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일수 정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일수 정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5조).
- 나. 노역장유치에서 벌금형의 유치기간을 벌금형의 일수에 따르도록 함(안 제70조).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벌금을 일수(日數)로 산정하여 선고하는 소위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만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벌금을 총액으로 선고하는 이른바 ‘총액벌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i)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일수 정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안 제45조제2항), ii) 법원은 벌금형 일수 정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1일 평균 수입 및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의 수입 및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안 제45조제3항), 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5조제4항), 벌금형의 유치기간을 벌금형 일수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현행	개정안
<u>第45條(罰金) 罰金は 5萬圓 以上으로 한다. 다만, 減輕하는 경우에는 5萬圓 미만으로 할 수 있다.</u>	<u>제45조(벌금) ① 벌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수(日數)로 산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할 때에는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u> <u>②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u>

第70條(노역장 유치) ① (생략)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3년 이하로 하고, 일수 정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법원은 벌금형의 일수 정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벌금형의 일수 정액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벌금형의 일수와 일수 정액은 판결서에 기재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벌금형의 유치기간은 벌금형의 일수에 따른다.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일수벌금제도 개관 및 그간의 경과

벌금제도는 크게 나누어 벌금의 총액만을 선고하는 “총액벌금제”와 벌금을 일수와 일수 정액으로 나누어 선고하는 “일수벌금제”로 나눌 수 있고, 현행 우리 형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일수벌금제는 우선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다음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일당 벌금액을 정하여, 양자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최종적 벌금액이 되는 것으로서, 벌금형 부과 효과가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임¹⁾.

일수벌금제는 1986년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도입 여부가 검토된 바 있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음.²⁾

이후 1992년 「형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법무부는 벌금형의

1) 예컨대, 갑과 을의 범죄행위가 동일하여 각각 벌금일수 30일이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결과 갑의 1일당 벌금액은 10만원, 을의 1일당 벌금액이 20만원으로 결정되면 최종 벌금액은 갑은 300만원, 을은 600만원이 됨.

2) 정승환, “형벌의 불균형과 일수벌금제의 도입”, 형사법의 신동향 제37호(2012), 대검찰청, p.316

불평등을 피하기 위한 제도로써 일수벌금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1일 벌금액 산정을 위해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음.³⁾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3건의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693호 소병철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2104271호 이탄희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제2102396호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나. 일수벌금제도 도입 논의 및 외국 입법례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대립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수벌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면,

① 일수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절한 벌금형을 부과하므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여 형벌효과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⁴⁾

② 불법과 책임이 동일한 행위에 따라 일수를 산정하고, 1일당 벌금액을 산정할 때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함으로써 법관

3)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형법개정자료(1992. 10.), p.55~56

4) 오경식,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제언”, 법학논총 제20집 제2-2호(2013),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p.540

의 양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관에 따라 다른 양형상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음.⁵⁾

③ 벌금미납시 환형유치에 대한 환산기준을 선고된 일수와 일대일의 비율에 의해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음.⁶⁾

④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지워 국가형벌권 행사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벌금형이 너무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⁷⁾

2) 일수벌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에 따르면,

① 일수벌금제의 경우 범죄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 경제적 능력”이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주된 변수가 되는데, 다른 양형사유에 비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지나치게 강조될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 동일 행위에 대하여 사람마다 벌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외형상의 불평등은 오히려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⁸⁾⁹⁾

②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적절한 벌금액 산정을 위한 재산상태 등의 조사로 법원 업무가 가중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5) 최호진,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법학논총 제38권제2호(2014),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p.270

6) 신의기,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수벌금제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7권제3호(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116

7) 최호진, 위의 논문, p.269

8) 이기현, “일수벌금형제도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8권제3호(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514

9) 박기석, “벌금형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2권제2호(2000), 한국형사정책학회, p.20~21

는 점에서, 헌법 제27조제3항¹⁰⁾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③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및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월급소득자가 자영업자 등에 비하여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음.¹¹⁾

참고로 벌금제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¹²⁾

- 1)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 도입된 이래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5년), 오스트리아(1975년), 스위스(2002년)가 각각 도입하였음.
- 2) **총액벌금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음. 이 중 영국의 경우 1992년 10월부터 일수벌금제를 시행하였으나, 6개월 만에 시행을 중지하고, 총액벌금제로 회귀한 바 있음.
- 3) 프랑스는 이례적으로 1983년 **총액벌금제와 일수벌금제를 함께 채택**하였고, 판사가 총액벌금과 일수벌금 사이에서 선택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10)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강동범, “재산형의 문제와 개선방향: 벌금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5호(1990), 한국형사정책학회, p90

12)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일수벌금제에 대한 외국 입법례’ 참조

다. 검토의견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현행 형법이 총액벌금제를 채택함으로써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동일한 금액이 선고되더라도 형벌 효과가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본질적 문제¹³⁾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행위임에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액을 선고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부합하는지 문제될 수 있고, 일수벌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상태의 정확한 파악을 전제하는데, 이러한 조사 업무가 법원이나 검찰 업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저해할 수 있으며, 개개인별 정확한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056

13) 최호진, “일수벌금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법학논총 제38권제2호(2014),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p.261

<참고자료: 일수벌금제에 대한 외국 입법례>

1. 일수벌금제를 채택한 국가

○ 개요

일수벌금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래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5년), 오스트리아(1975년)가 도입하였고, 프랑스는 1983년 총액벌금제와 일수벌금제를 함께 채택하였으며, 스위스는 2002년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핀란드

일반적으로 벌금일수는 최소 1일에서 최대 120일의 범위에서 결정되나,¹⁴⁾ 2개 이상의 범죄에 의하여 동시에 일수벌금이 선고될 때에는 최대 240일 까지 선고될 수 있음. 1일당 벌금액은 별도로 범위를 두고 있지 않으나 매일 평균수입의 60분의 1로 하고 있음.¹⁵⁾

○ 독일¹⁶⁾

원칙적으로 벌금일수는 최소 5일에서 최대 360일이며, 수 개의 일수벌금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최대 720일까지 합산할 수 있음¹⁷⁾. 1일당 벌금액은 1유로에서 3만유로(약 1,600원 ~ 4,800만원)까지 범위를 두고 있음.

14) The Criminal Code of Finland(39/1889, amendments up to 927/2012 included), Chapter 2(a) Section 1(1).

15) 위 The Criminal Code of Finland, Chapter 2a Section 2(2).

16) Strafgesetzbuch(StGB) 제40조(일수벌금형) ①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한다. 벌금형은 최소 5일로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 360일로 한다.

② 벌금형의 일수정액은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일일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 수 있는 순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일일 벌금정액은 최소 1유로, 최고 30,000유로로 결정된다.

③ 일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수입, 재산 기타 기초사실 등이 사정될 수 있다.

④ 벌금형의 일수와 일수정액은 판결로 정한다.

제41조(자유형에 병과되는 벌금형) 행위자가 범죄를 통해 이득을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한 경우에 행위자의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자유형에 병과하여 법률에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17) 독일형법, §54(2).

○ 오스트리아¹⁸⁾

벌금일수는 최소 2일 이상으로 하여 하한은 정하고 있으나, 상한은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1일당 벌금액은 최소 4유로에서 최대 5천유로(약 6,500원 ~ 810만원)임.

○ 스위스¹⁹⁾

벌금일수는 최대 360일이며, 1일당 벌금액은 최대 3천 스위스프랑(약 520만원)임.

18) The Criminal Code of the Republic of Austria 제19조(벌금형) ① 벌금형은 일수(日數)로 산정한다. 벌금형의 하한은 2일수이다.

② 일수 정액은 1심 판결시의 범죄자의 개인적 사정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산정한다. 일수 정액의 하한은 4유로이며 상한은 5,000유로이다.

③ 벌금형을 집행할 수 없는 때에 대비하여 대체자유형을 정해야 한다. 이 때 대체자유형 1일은 벌금형 2일수에 해당한다.

④ 폐지

제31조a(형벌, 범죄수익몰수, 재산가치박탈의 사후적 감경) ① 형벌을 감경할 사유가 사후적으로 발생하거나 알려진 때에는 법원은 형벌을 적절하게 감경해야 한다.

② 벌금형에 처해진 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경제적 능력이 사후적으로 중대하게 악화된 경우 법원은 아직 집행되어야 할 벌금형에 대하여 일수 정액의 상한을 제19조 제2항의 한도에서 새롭게 정해야 한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상황을 고의적으로 또는 직업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써 악화시킨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판결 당시 존재하였다면 재산가치박탈이 없었거나 적은 액수의 재산가치박탈이 있었을 사정이 사후적으로 발생하거나 알려진 때에는 법원은 그에 맞게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

제37조(자유형을 대체하는 벌금형의 선고) ① 어느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자유형이 규정되어 있을 때 행위자로 하여금 더 이상 범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유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대신에 720일수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② 어느 행위에 대해 제1항의 자유형보다는 중하나 10년 이하인 자유형이 규정되어 있을 때 행위자로 하여금 더 이상 범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유형의 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범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선고로 충분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대신에 720일수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19) The Swiss Federal Criminal Code 제34조 【벌금형】 ①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벌금은 최소 3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부과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인의 유죄 책임 정도에 따라 일수를 정한다.

② 일반적으로 1일 벌금액은 최소 30프랑에서 최대 3000프랑이다.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개인적·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 1일 벌금액은 10프랑으로 감축될 수 있다. 판사는 선고 당시 피고인의 소득, 자산, 생활방식, 가족 부양의무, 최저생계비 등 개인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1일 벌금액을 정한다.

③ 연방, 칸톤(시 단위), 코문(동 단위) 기관은 판사에게 1일 벌금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판결문에는 일수 및 1일 벌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총액벌금제를 채택한 국가

○ 개요

총액벌금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뉴욕주 등 일부 주에서 일수벌금제를 실험한 바 있으나 벌금의 강제집행과 납부관리가 어렵고, 각 주에서 시행하는 사생활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소득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유로 일수벌금형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지는 않게 되었음.²⁰⁾

○ 영국

「Criminal Justice Act 1991」에 의하여 1992년 10월부터 일수벌금제를 시행하였으나 ① 자력조사가 곤란하고, ②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법관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6개월 만에 시행을 중지하고, 「Criminal Justice Act 1993」에 의하여 총액벌금제로 회귀한 바 있음.²¹⁾

○ 일본

형법개정과정에서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① 범죄인의 경제사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렵고, ② 현재에도 어느 정도 범죄인의 자력을 고려한 양형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도입하지 않은 바 있음.²²⁾

20) 최호진, “일수벌금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및 국내도입가능성 연구”,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 (2011), 법무부, p.949

21) Exercising Discretion, Gelsthorpe and Padfield, 2003, p.61~62

22) 강동범, “재산형의 문제와 개선방향: 벌금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5호(1990), 한국형사정책학회, p.91

3. 일수벌금제와 총액벌금제를 병행하는 국가

○ 프랑스²³⁾

총액벌금제와 일수벌금제를 함께 채택하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 판사가 총액벌금과 일수벌금 사이에서 선택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바, 총액벌금은 주로 경죄와 위경죄²⁴⁾를 범한 자에게 선고되고 예외적으로 중범죄인에게 선고되는 경우도 있음²⁵⁾. 일수벌금의 경우 벌금일수는 최대 360일이고, 1일당 벌금액은 최대 1000유로(약 160만원)임.

23) The Criminal Code of the French Republic 제131-5조 【일수벌금형】 법원은 구금형에 처하여 지는 경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일수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일수벌금형은 일정 일수에 대하여 법관이 피고인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정하는 1일 벌금부과액으로부터 산출되는 총금액을 피고인이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며 1일 부과액은 1,0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일수벌금형의 일수는 범죄의 정상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3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2-22조 【사법기관에 대한 금융 세무정보의 제공】 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사판사 또는 수소법원은, 비밀보호의무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행정기관, 금융기관 기타 피고인의 자산을 점유하는 자에게 유용한 금융 또는 세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4) 위경죄(abertretung, 違警罪)는 전통적인 범죄분류의 하나로서, 구류나 과료에 해당하는 가벼운 범죄를 의미함. 우리나라에는 법제상으로나 학설상으로 그러한 분류법이 없으나, 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와 각종 행정법규상의 가벼운 범죄 등이 위경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5) 손병현, “프랑스 형법상 단기구금형의 부분적 대체방안으로서의 일수벌금형”,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2009), 한국형사법학회, p.276